2023학년도 제 182 호

## 교육 등시



군산용문초등학교 연락처: 466-8237

## 2023 용문초 학생생활규정 개정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용문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꼭 읽어보시고 자녀의 학교생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 정 안-

- 1.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에 따라 고시에서 학칙에 위임한 사항(학생 분리지도, 물품 분리보관 등) 신설
- 2. 학생생활규정의 적용 근거 구체화
- 3. 기존 학생생활규정 중 고시 내용과 맞지 않는 내용 삭제 및 수정
- 4. 주요 내용(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 학생생활규정 전문 및 교육부 고시 해설서 참고)
  - 교사는 학생의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에 대한 생활지도를 할 수 있음
  - 생활지도의 종류: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보상 등 (체벌은 금지)
  - 학생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따르고, 교원의 수업권과 타인의 학습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할 경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짐
  -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음. (교실 내 다른 자리, 교실 밖 지정 장소, 보호자 인계)
  - 학교 생활에 부적합한 물품은 분리할 수 있음
  - 주요 분리 물품: ①수업 중 사용하는 휴대전화나 녹음기 등의 전자기기(통신비밀보호 법, 교원지위특별법 등에 따라 교사의 동의 없는 수업 중 녹음은 금지됨),
    - ②다른 사람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라이터, 흉기모형장난감, 레이저빔 기기 등), ③청소년 판매금지 물품(술, 담배 등) ④학칙으로 정한 물품(도박 관련 물품,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물품, 학습과 관련 없는 음식 등)
  - 학교의 장은 생활지도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행동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경우 학생을 징계할 수 있음
  - 학생 징계: ①학교내의 봉사(10일 10시간 이내), ②사회봉사(10일 20시간 이내), ③특별교육이수(5일이상), ④출석정지(1회 10일이내, 연간 30일 이내)
  - 학생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 : 13명 내외의 교직원, 학생대표, 보호자로 구성하며 학생대표는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함.
  - 본교 학생생활규정 내용 중 물품분리보관, 학생 분리에 관한 내용은 별표 1, 2를 참고

2023년 12월 27일 군산용문초등학교장 ■ 군산용문초등학교 학생의 학생생활에 관한 규정 [별표 1]

## <u>학생으로부터 분리·보관할 수 있는 물품의 보관 방법</u>(제12조 관련)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고시) 제11조제2항에 따라 <u>2회 이상</u>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 하는 물품 (예시) 정보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수업 분위기를 방해하는 물품 등		교실 지정 장소	<ul> <li>· 1회차 : 주의 실시</li> <li>·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li> <li>·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li> <li>· 수업 종료 후 : 즉시 되돌려줌</li> </ul>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흉기, 라이터, 성냥, 레이저빔 기기, 흉기모형장난감(칼, 총, 너클 등), 호신용 스프레이, 학습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위해를 주는 물품 등	3일	교무실	<ul> <li>분리보관 사유를 알림</li> <li>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li> <li>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li> <li>분리 물품에 대해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간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li> <li>※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폐기 조치</li> </ul>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박 물품,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나 물품 등			

<sup>※</sup> 제11조(주의)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u>학생 분리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u> (제16조 관련)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16조 2항 1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수업 중 자리 이탈, 장난, 잡담, 소음, 등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교실 내 다른 좌석		교실 내에서 수업 참여				
<b>16조 2항</b> 2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u></u>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실 내 지정된 위치	실외 교육 활동 시 학습합단으 로부터의 분리 포함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가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교과 내용 관련 또는 행동개선에				
16조 2항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③ 긴급한 행동 개선 또는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욕설, 성적 발언 등) ④ 교육활동 침해 상황이 발생한 경우	- 교무실, 교장실, 상담실, 성찰교실 등 학교장이 지정한 교내 별도의 장소 (수업 종료 시까지 또는 충분한 자기성찰이 이루어졌다고 판단시)	·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 인계 요청 · 학교의 장 책임하에 교직원이 지정 장소로 이동 및 지도 · 관리자 부재시 교직원이 협력하여 학생 분리 및 지도					
16조 2항 4호 지도	특별한 사유 없이 수업시간에 가 지각·결과*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분) 보장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 히 따르지 않는 경우 나 ② 학교폭력, 교육활동침해, 생활교육위원회 시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교무결, 교정결, 정념결, 성찰교실 등 학교장이	방과후 분리시에는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b>16조 3항</b> 지도 가정으로의 분리 (보호자 인계)	<ul> <li>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는 경우</li> <li>2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li> </ul>	학생 가정	· 출석 인정 · 보호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서식2를 가정으로 보내, 분리 종료시 다시 학교에 제출 · 위의 서식은 [가정학습 신 청서 및 결과보고세로 갈음 할 수 있음					
기타	※ 특수교육대상자는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생활지도고시 15조 1항, 35 ※ 지각·결과의 기준 (수업 시작 10분 후 교실에 입실하거나 수업 종료 10분 전 퇴실 하는 경 ** 16조 2항 제3호 지도시 학생의 특성상 요건 [가]에 의한 복도로의 분리 실행이 어렵 판단되는 경우(무단 이탈 등의 우려) 바로 요건 [나]에 해당하는 분리를 실행할 수 있음. **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학교 여건에 따라 시간대별로 교직원이 분담하는 방식 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 ** 학생분리 시 지도교사는 교장, 교감, 상담교사를 우선으로 하고, 지도가 어려울 경우 시간 수업이 없는 교사를 배정함							

참고: 학생생활지도 카드뉴스 (출처: 교육부)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 안내드립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란?

생활지도가 필요한 구체적 상황 및 지도요령, 관련 법령 및 판례, Q&A, 필요 서식 등이 담겨있습니다.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근거한
교원의 생활지도는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형법」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

학교의 장. 교원은 교육활동 중 학생에게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그 밖의 분이에 대해 생활지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인식시 언제든지 조언 가능, 권고

#### 상담



상담예약 및 사전협의 상담거부 및 중단 가능

#### 주의



학교안전 및 질서유지 저해 우려시 주의



지시, 제지(물리적 제지 포함) 분리, 물품조사 및 분리보관

#### 훈계



과제부여 [대안행동, 성찰문, 원상복구]

#### 보상



칭찬. 상 등

#### 교육부

## 문제행동에 대한 생활지도 절차



학생 문제행동 인식시

조언

교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른 문제해결 지원

or

상담

해결방안 탐색 지원

or

주의

문제점 지적, 문제행동 소거를 위한 경고



문제행동 미인정·미개선시

훈묘

문계

지시, 제지, 물품 분리 보관

분리 → 필요시 보호자 인계 가정학습

- 문제행동시정 대안행동 제시

- 성찰하는 글쓰기

- 훼손된 시설에 대한 원상 복구

